

●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772호

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(정정) 공고합니다.

2023년 06월 27일

국토교통부장관

2023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

1. 2023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공시

가. 공시(가격) 기준일 : 2023년 1월 1일

나. 대상 공동주택수 : 이의신청 조정 22호, 연관세대 정정 546호

다. 공시사항 : 공동주택의 소재지, 명칭, 동·호수, 면적, 가격(내용 생략,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열람 및 주소지 또는 주택소재지로 개별통지)

라. 열람장소 :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(www.realtyprice.kr)

2. 정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

가.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3년 6월 27일부터 2023년 7월26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.

나. 이의신청은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20조 별지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(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받거나 시·군·구 민원실에 비치)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(또는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)에게 제출하여야 함.